경기위원회 규정

제정 : 2025. 7. 30.

제1조(설치 근거 및 명칭)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정관 제37조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본 협회 주최 · 주관 대회의 개최 계획 수립, 공정한 경기 운영을 도모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기대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2. 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경기규칙의 연구 · 해석 및 보급에 관한 업무
4. 기록의 공인 업무
5. 기타 경기에 관련된 업무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2인
3. 위원 13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사무처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이를 위촉 및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부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의안 작성, 회의록 작성보관, 회무 보고 및 기타 회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회의 결과를 사무처의 소정 절차를 거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장의 재가를 득함 또는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날(2025. 7. 30.)로부터 시행한다.